

5. 복리후생비

□ 예산상 복리후생비

○ 임원

(단위 : 원)

구 분	항 목	2023년 3/4분기	2023년 4/4분기
급여성 복리후생비	명절 보조비	300,000	-
	창립기념일 보조비	-	300,000
	근로자의날 보조비	-	-
소계(A)		300,000	300,000
비급여성 복리후생비	경조비	-	-
	*건강검진비	-	1,000,000
	기타(식대)	1,199,632	829,251
소계(B)		1,199,632	1,829,251
총 계(A+B)		1,499,632	2,129,251

○ 직원

(단위 : 원)

구 분	항 목	2023년 3/4분기	2023년 4/4분기
급여성 복리후생비	명절 보조비	55,275,000	-
	창립기념일 보조비	-	57,975,000
	근로자의날 보조비	-	-
소계(A)		55,275,000	57,975,000
비급여성 복리후생비	경조비	5,112,000	5,540,000
	*건강검진비	-	108,838,360
	기타(식대)	83,457,401	77,323,409
소계(B)		88,569,401	191,701,769
총 계(A+B)		143,844,401	249,676,769

* 기관 예산에 편성되어 복리후생비로 지급된 내역

* 정규직, 계약직 구분 없이 전 직원으로 포함

* 건강검진비의 경우, 4분기 일괄 정산

□ 사내복지기금

-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현황
 - 해당사항 없음

□ 지급 기준

- 지급 기준

구 분	관련규정상 주요내용	관련규정명 및 해당조문
명절 보조비	○ 명절 보조비 - 설날 : 150,000 - 추석 : 150,000	단체협약 제44조(선물 지급)
창립기념일 보조비	○ 창립기념일 보조비 : 150,000	단체협약 제44조(선물 지급)
근로자의날 보조비	○ 근로자의날 보조비 : 150,000	단체협약 제44조(선물 지급)
경조비	○ 경조비 - 결혼 : 500,000 - 사망 : 500,000	단체협약 제46조(경조사 지원)
건강검진비	○ 건강검진비 - 연 1회 정기 건강검진 실시	취업규칙 제70조(건강진단)

* 명절·창립기념일·근로자의날 보조비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

□ 1인당 복리후생비

- 임원

(단위 : 원)

항 목	2023년 3/4분기		2023년 4/4분기	
	1인당 복리후생비	예산	1인당 복리후생비	예산
명절 보조비	150,000	300,000	-	-
창립기념일 보조비	-	-	150,000	300,000
근로자의날 보조비	-	-	-	-
경조비	211,069	422,138	211,069	422,138
*건강검진비	-	-	500,000	1,000,000
기타(식대)	675,000	1,350,000	675,000	1,350,000
소 계	1,036,069	2,072,138	1,036,069	2,072,138
평균인원	2		2	

○ 직원

(단위 : 원)

항 목	2023년 3/4분기		2023년 4/4분기	
	1인당 복리후생비	예산	1인당 복리후생비	예산
명절 보조비	150,000	58,650,000	-	-
창립기념일 보조비	-	-	150,000	58,650,000
근로자의날 보조비	-	-	-	-
경조비	211,069	6,490,363	211,069	6,490,363
*건강검진비	-	-	300,000	117,900,000
기타(식대)	675,000	94,535,750	675,000	94,535,750
소 계	1,036,069	159,676,113	1,036,069	159,676,113
인 원	391		391	

* 정규직, 계약직 구분 없이 전 직원으로 포함

* 건강검진비의 경우, 4분기 일괄 정산

기준일	2023. 12. 31.	제출일	2024. 1. 26.
-----	-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

○ 기관 공시 담당자

구 분	담당자명	부서명	전화번호
작성자	김규빈	경영지원팀	02-3442-7630
감독자	한상도	경영지원팀	02-3442-5681
확인자	김규빈	경영지원팀	02-3442-7630